자녀에게 돈·집을 주기 전에

증여, 하기 전에 확인할 것

조영민세무회계
세무사 조영민 · 031-334-7001

증여세 공제는 **받는 사람 기준, 10년 합산**입니다.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한 묶음으로 계산합니다.

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(10년 합산)

	받는 사람	공제 한도
☐	**성년 자녀·손주**	5천만 원 (혼인·출산 때 1억 원 추가)
☐	**미성년 자녀·손주**	2천만 원
☐	**배우자**	6억 원
☐	**그 밖의 친족**	1천만 원

혼인·출산 공제 1억 원은 **혼인신고일 전후 2년, 출생일부터 2년** 안에 받은 것에 적용되고,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.

주기 전에 체크

- ☐ 지난 10년 동안 같은 사람(부모·조부모 포함)에게 이미 준 금액을 모두 적어 보았다
- ☐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경우 세금이 30% 더 붙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(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%)
- ☐ 부동산이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있고, 주택은 지역·가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르다
- ☐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, 이자 지급, 갚은 기록이 실제로 남는다
- ☐ 부모님 연세가 많다면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

준 다음에

- ☐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 (기한 안 신고 시 3% 공제)
- ☐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기 (나중 자금 출처 설명용)
- ☐ 이체 기록·계약서 보관
- ☐ 다음 증여 가능 시점(10년 뒤) 메모

예상 증여세, 먼저 계산해 보세요

QR을 찍으면 증여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· cymtax.co.kr

조영민세무회계 · 세무사 조영민 ·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3, 3층 306호 · 031-334-7001 · 평일 09:00–18:00

2026년 11월 현행 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의무와 세액은 업종·매출·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